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3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7년 4월 23일

발 의 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민태승의원외 3인

1. 수정이유

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주요골자

- 조문내용중 일부 자구를 수정함. (안 제13조)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 13조제1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되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경우 17시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원 안	개 정 안	수 정 안	비 고
제13조(근무시간)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(단서신설)	제13조(근무시간)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,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. <u>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,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.</u>	제13조(근무시간)① . <u>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하되 토요일 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로 한다.</u>	